

이 용 계 약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 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② 계약대상 : 장기 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2. 계약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3.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1일/원) 및 월 한도액(원) *2023년 1월 1일기준

구분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1등급	38,630	7,767	9,660	10,643	11,412
2등급	35,760	7,194	8,949	9,858	10,572
3등급	33,010	6,641	8,262	9,108	9,767
4등급	31,510	6,416	8,037	8,879	9,540
5등급	30,000	6,186	7,808	8,654	9,315
인지지원등급	30,000	6,186	7,808	7,808	7,808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감경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으로 9%(혹은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혹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 식사재료비 1식 3,700원, 간식비 1회 600원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6. 비용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입금계좌는 농협/131-021-060537/희망나눔주 간보호센터로 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⑥ 이용자의 책임이행

1. 시설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대상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대상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⑦ 계약의 해제

1. 대상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바.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차. 이용규정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카.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타. 이용자는 시설의 근로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이용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

제 2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